

마포구 출자·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

위원 추천의 건

☐ 관련근거
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

☐ 추천의뢰: 예산정책과

☐ 위원자격: 출자·출연 기관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(의원 제외)

☐ 임 기: 2년 (1회 연임 가능)

☐ 기 능: 아래 사항을 심의·의결

- 출자·출연 기관의 설립·운영 타당성
- 출자·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 요구
- 경영실적 평가 제외 대상기관 선정 등

☐ 추천위원(안)

연번	성명	성별	주요 경력
1	김 종 학	남	성암 새마을금고 이사장